



신속확인 심의 절차



* 심의 결과 '적합' 판정 시 신속확인서 발급

* 심의결과 '보류'판정 시 10일 이내 판정 사유 보완 후 1회에 한해 재심의 요청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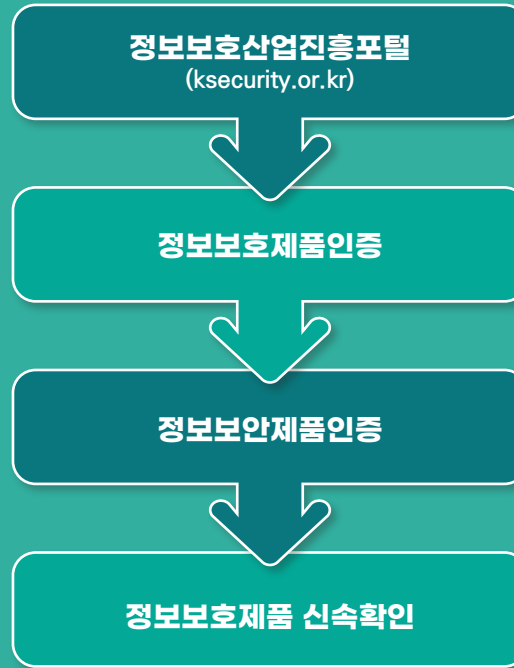
유효기간 : 2년



신속확인 심의 기준



신속확인 제품 확인 방법



안내

KISA 대표 홈페이지(www.kisa.or.kr)
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(www.ksecurity.or.kr)

문의처

한국인터넷진흥원

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(가락동 78) IT벤처타워 서관 8층

fasttrack@kisa.or.kr 02-405-5011



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제도





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제도

신속확인이란?

기존 인증제도에서 평가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융·복합 정보보호제품의 보안성을 확인하는 제도

* 관련 근거 :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

기존 인증제도에서

평가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융·복합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

*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정부공공기관 분류체계에 따라 '나', '다' 그룹 신속확인 제품 도입 가능

* '가' 그룹도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해 운영 가능



신속확인 대상 요건

1



평가기준이 없는
신기술 및
융·복합 기술 적용

2



제품의
형태

3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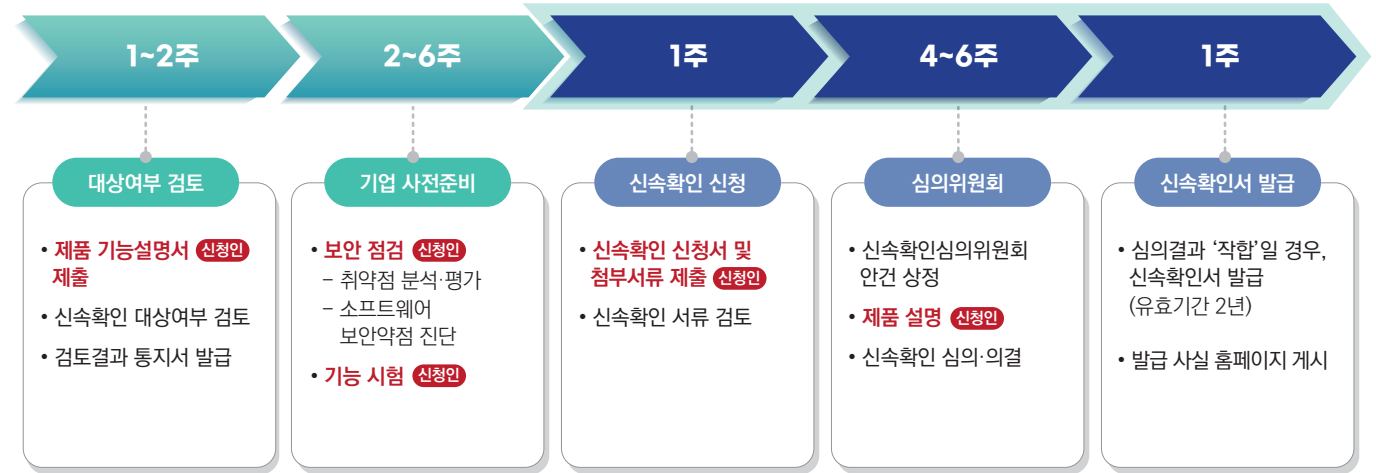
정보보호
기능 유

* 취약한 운영체제(Window7 등) 또는 낮은 커널 버전(리눅스 커널 2.X 기반 등)을 사용하는 제품은 국가·공공기관 도입이 불가하므로 신속확인 신청 전 미리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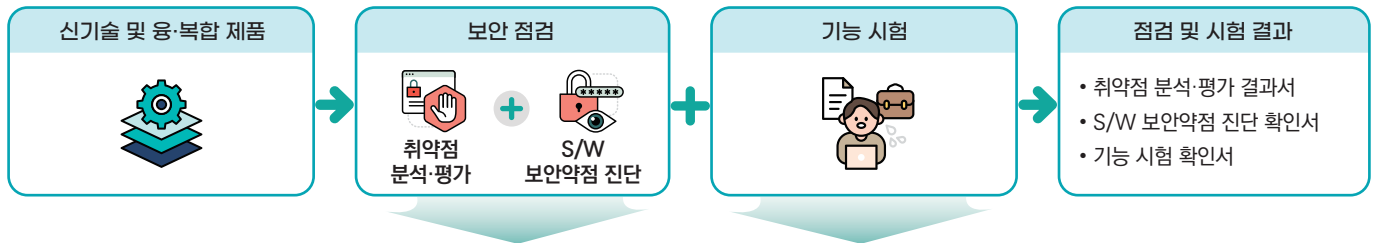


신속확인 주요 절차

약 1.5~2개월 소요 (신청~확인서 발급)



신속확인 사전준비 사항



▶ 보안 점검

- 취약점 분석·평가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
- 최초 점검·시험 → 기업의 보완조치 → 이행 점검·시험

보안 점검 기관 (고시 107항)

정보보호
전문서비스 기업

정보시스템
감리법인

정보보호시스템 평가기관
(CC평가기관)

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
(GS인증기관)

▶ 기능시험

- 전체 기능 중 주요 기능에 대한 정상 구현 및 동작 여부 시험
- * GS인증서로 대체 가능

기능 시험 기관 (고시 109항)



KOLAS 공인시험기관

ISO/IEC 25051
규격 보유

ISO/IEC 25023
규격 보유